

공공시설 청소 요약

뉴욕시 위생국(DSNY)은 뉴욕 시가의 청결과 쓰레기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현재 시 현장에 따르면 쓰레기 처리를 위한 보도 사용과 관련된 규정을 채택하고 동 규정 미준수 시 벌금, 징역형 또는 민사 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 처분을 내릴 권한이 뉴욕시 위생국에 있습니다. 현재 현장에는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담아야 한다는 요건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뉴욕시 위생국에서는 쓰레기통에 담지 않은 쓰레기가 뉴욕 시가에 방치되어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여러 규칙을 계속해서 발표해 왔습니다. 또한 현재 현장에는 공원이나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와 같은 특정 시설에 대한 관할권이 뉴욕시 위생국에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노점상 단속국이 뉴욕시 위생국 산하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원과 같은 특정 시 소유 시설에 대해서는 노점상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본 개정안은 시장의 지시로 모든 시 소유지를 청소할 수 있는 관할권이 뉴욕시 위생국에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노점상들에게 시가를 비롯한 시 소유 시설에서 위생 요건의 준수를 의무화하는 권한이 뉴욕시 위생국에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도에 쓰레기 봉투를 방치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넣도록 하는 뉴욕시 위생국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법안 통과 시 추가로 발생할 비용 추산 및 예산 마감 시한 개정 요약

본안은 지역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칠 재정 영향에 관한 추가적인 분석을 요약합니다. 또한 일부 예산 일정의 개정도 요약합니다.

첫째,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시의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공청회 및 찬반 투표를 하기에 앞서 법안 통과 시의 비용 발생분 추산이 우선적으로 이뤄집니다. 또한 시의회에서는 시장 직속 관리예산국 자체 추산치를 적시에 제출할 기회를 허락해야 합니다.

현재 시 현장에서는 시의회 산하 위원회 및 전체 시의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찬반 투표 이전에 재정영향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재정영향서 작성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통례적으로 시의회에서 작성합니다. 이러한 시의회의 역할이 금번 개정을 통해 성문화됩니다. 또한 공청회 실시에 앞서 재정영향서 요건을 입법절차 초기에 상정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개정이 이뤄지면 시장은 직속 관리예산국을 통해 재정 추산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누리게 됩니다. 그 결과, 재정영향서에는 시의회와 시장이 각기 작성한 추산 자료가 수록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본 개정안은 시의회에서 지역 법안에 관한 공청회나 전체 시의회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시장에게 8일 전까지 통지(시장이 통지를 포기하지 않는 한)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직속 관리예산국 자체 추산치를 적시에 제출할 기회를 허락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청회나 투표 최소 3일 전까지 관리예산국의 응답이 없더라도 시의회는 공청회나 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시 현장에 명시된 예산 관련 여러 기한이 최근 관행에 맞춰 개정될 것입니다. 특히, 시장 선거 직후 연도의 예비 예산안

제출 기한을 1월 16일에서 2월 1일로 연장함으로써 새로운 시장 행정부가 예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 가지 선례를 소개하자면, 시의회는 기존 1월 16일이라는 기한이 새 행정부가 지키기에 빠듯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서, 과거에 새 시장이 취임하면 예비 예산안 제출 기한을 연장하는 지방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제안된 개정안은 새로운 예비 예산 기한에 맞춰 관련 예산 기한도 유사하게 개정합니다. 시장 선거를 치르는 해에는 시장이 채무 및 부채에 대한 예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 1월 16일에서 2월 1일로 연장되고, 독립예산처의 세입세출 보고 기한이 2월 1일에서 2월 15일로 연장됩니다.

마찬가로, 이번 개정안은 보다 정확한 집행예산안 제출을 촉진하기 위해 집행 예산안 제출 기한을 4월 26일에서 5월 1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헌장에 따르면 시장이 집행예산안을 제출하는 기한은 4월 26일로, 이는 세금 징수 관련 정보가 뉴욕시에 제공되는 4월 15일 세금 보고 마감일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빠듯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집행예산 마감일을 5월 1일로 약간 연장하면 관리예산국이 예상 세수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집행예산안에 대한 자치구청장의 권고안 제출 기한을 5월 6일에서 5월 13일로 연장하게 됩니다.

공공치안 법안에 대한 투표 전 추가 공지 및 시간 요약

경찰청, 교도소, 소방서 등 3개 시 기관의 공공치안 운영과 관련한 지역 법안에 관한 투표에 앞서 해당 법안에 대한 시의회의 심의에 추가적인 절차적 요건을 마련하는 개정안입니다.

공공치안 개정안에 대한 전체 시의회의 투표를 진행하기에 앞서, 시의회는 해당 투표에 앞서 최소 30일 전까지 일반인, 시장 및 해당 부처장에게 추가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시장과 해당 부처는 이러한 통지와 투표 사이의 기간을 활용해서 해당 개정안에 대한 추가 공청회를 한 번 이상 개최해서 대중의 의견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본 개정안에 의해 부과된 추가 절차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본 계획 요약

뉴욕시는 인프라에 투자할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자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러한 평가의 일환으로 뉴욕시의 필요시설 연례 평가서, 시설 연례 목록, 10개년 자본 전략(작성 주기 2년) 등 각종 문서를 통해 시 인프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합니다. 이들 세 문서 모두 뉴욕시의 기존 인프라와 계획된 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시 현장에서는 필요시설 평가서를 작성할 때 유지 보수 필요성 검토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뉴욕시의 10개년 자본 전략에 공식적인 시설 인벤토리나 필요시설 평가문을 심의하도록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뉴욕시에서 연례 필요성 평가서를 통해 중요한 시 소유지 확장 및 축소를 평가할 때 모든 시 소유지의 상태, 기능, 예상 내용연수 등 유지보수 필요성 관련 정보도 가능한 범위에서 수집하도록 요구하는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또한 도시계획부와 관리예산국이 10개년 자본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리적 분포, 회복성에 미치는 영향, 부처 운영을 위한 시설의 중요성 등 기타 요소와 함께 시 소유 시설의 상태 및 유지보수 필요성도 심의하도록 요구합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10개년 자본 전략 수립 기한을 기존의 11월 1일에서 시의 예비 예산안 제출일인 1월 16일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10개년 자본 전략에 관한 공청회 개최일도 최초 제출일에 맞춰 보다 늦은 날짜로 변경하게 됩니다.

소수민족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영화 허가 및 아카이브 심사 위원회 요약

시 헌장의 여러 조항을 수정하는 개정안입니다.

첫째, 소수민족 및 여성 소유 기업(MWBE)을 지원하기 위해 시 헌장에 최고 비즈니스 다양성 책임자(CBDO) 직위를 신설합니다. 또한 CBDO가 MWBE의 연락 창구 역할을 하고, 조달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며, 시 정책에 필요한 변경 사항을 제안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입니다.

둘째, 시장이 영화 허가를 처리하는 부서인 시장 직속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국(MOME)에 허가 발급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입니다. 현재 시 헌장에는 영화 및 텔레비전 허가 발급 권한이 중소기업 서비스국에만 부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화 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뉴욕시의 창조경제를 부흥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MOME 국장은 중소기업 서비스국 소속 직원이 됩니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그 자리가 일시적으로 공석인 경우 다른 MOME 직원은 영화 및 텔레비전 허가를 승인할 수 없습니다. 본 개정안은 시장이 이러한 허가를 부여할 다른 시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시장이 MOME를 지정하고 적절한 경우 다른 MOME 직원이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셋째, 본 개정안은 시 기록물 검토에 중점을 두고 헌장에 의해 만들어진 두 개의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합니다. 현재 헌장에 따르면, 뉴욕시는 기록 검토 위원회와 기록물, 참고 및 연구 자문 위원회를 모두 유지해야 합니다. 이 두 위원회는 사명 및 연례 보고 의무가 유사하므로,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시 자원을 절감하기 위해 기록물 검토 위원회와 기록물, 참고 및 연구 위원회를

하나의 기구인 시 기록물 및 도서관 자문위원회로 통합하게 됩니다. 본 개정안은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